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74년 11월 19일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1974년 10월 17일에서 11월 23일까지 파리에서 제 18차 유네스코 총회를 열고,

국제 이해, 협력과 평화, 그리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엄성을 증진키 위해 유엔 헌장, 유네스코 헌장, 세계인권 선언,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정 (1949년 8월 12일)'에 명시한 목적을, 교육을 통해 이루는 것이 각국 책임임을 명심하고,

회원국의 정의, 자유, 인권 및 평화 진흥을 위한 모든 사람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어떠한 활동도 격려, 지지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그런데도 유네스코와 그 회원국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취학 아동과 학생, 젊은이 그리고 계속 교육받고 있는 성인과 교육자 중 오직 소수에게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 교육의 교과 과정과 방법이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이와 성인 요구와 열망에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더욱이 많은 경우에 공포한 이상이나 선언한 의도와 실제 상황 사이에는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유의하고,

제 17차 총회에서 이러한 교육을 회원국에게 권고할 주제로 삼기로 결정한 바,

1974년 11월 19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각국 헌법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권고가 규정한 원리를 각국 영토 안에서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 다음 조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초등 교육, 고등 교육, 학교 밖 교육을 맡고 있는 관계 당국이나 부처, 예컨대 학생운동과 청년 운동, 학생, 부모, 교사 연합과 기타 이익 집단처럼 젊은이와 성인 교육에 관계 있는 여러 단체가 본 권고에 관심을 갖도록 해줄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를 이행하느라 벌인 활동에 관해 총회가 결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 날짜에 맞춰 총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I. 용어의 의미

1. 본 권고 목적상:

(가) '교육'이란 그것을 통해 개인과 사회 집단이 국내 및 국제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위해 자기의 개인적 능력, 태도, 적성 및 지식 전반을 의식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든 사회 생활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어떤 특정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사회적, 정치적 제도가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간 우호주의와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존중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본 권고에서는 이들 용어에 함축된 서로 다른 의미가 합쳐져 때때로 '국제교육'이라고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다) '인권'과 '기본 자유'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정의한 것과 같다.

II. 범위

2. 본 권고는 모든 교육 단계에 적용된다.

III. 기본원칙

3. 유엔 헌장, 유네스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 "교육은 개성을 충분히 발달케 하고 인권 및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이해와 관용과 우의를 촉진하고 또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에 명시한 목적과 의도를 교육에 붙여넣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이 위 3항에 언급된 목적 달성에 능동적으로 기여케 하고, 개인 및 지역 사회 생활과 기본 권리 및 자유 행사에 영향을 주는 세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면 다음 목표를 교육 정책의 주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가) 모든 수준 및 모든 형식의 교육에 국제 차원과 세계적 시각에서 접근;

(나) 국내 민족 문화와 타민족 문화를 포함한 모든 민족,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 민족간, 그리고 국가간 범 지구적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라) 타인과 의사 소통 능력;

(마) 개인, 사회 집단 및 국가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자각;

(바) 국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사) 사회, 국가 및 세계 전체 문제 해결에 자발적 참여;

5. 학습, 훈련, 정보 및 행동을 결합, 국제교육은 개인의 적절한 지적, 정서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 교육은 사회적 책임감과 소외 집단의 연대감을 발전시켜야 하며, 일상 활동에 평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또 개인에게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질과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실과 의견과 사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집단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떤 토론에도 적용되는 기본 의사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 있는 사실과 요인을 합리적 분석해 그에 따라 가치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6. 교육은, 세력 확대와 침략과 지배를 위해 전쟁 수단을 사용하거나 억압을 위해 무력과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특히 강조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평화를 유지할 책임을 인식하고 또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국제 이해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모든 종류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과 인종 차별 정책 및 이 권고의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부추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투쟁 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

IV. 국가 정책, 기획 및 행정

7. 각 회원국은 모든 형식의 교육 효율성을 증대하며, 그 형식을 강화해 국제 이해와 협력, 정의로운 평화 유지와 발전, 사회 정의 확립, 인권과 기본 자유 존중과 적용, 그리고 편견, 오해, 불평등 및 본 권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불의를 근절하는데 더욱 기여하려는 국가 정책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

8. 회원국은 국가위원회와 협력해 관계 부처간 협력을 보장하고, 국제 교육에 일관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한 그들 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9. 회원국은 자국 헌법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본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야 한다.

V. 학습, 훈련, 행동의 상세한 측면

윤리적, 시민적 측면

10. 회원국은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국가 및 국민간 상호 의존 및 평등에 기초를 둔 태도와 행동을 강화, 개발해야 한다.

11. 회원국은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형식의 인종 차별 근절에 관한 국제 협약' 원칙을 모든 차원과 형식의 일일 교육 지침에 적용해 모든 어린이, 청소년, 장년 또는 성인에게 개성을 개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교육 쇄신과 확대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직접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학생, 부모, 관련 단체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 교육자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조적 상상력과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고, 각자 맡은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해야 한다.

13. 회원국은 모든 교육 단계에서 적극적인 시민 훈련을 촉진, 모든 개인이 공공기관의 일과 활동 방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익히게 해 지역 사회의 문화 생활과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디서든지 이러한 참여는 교육과 행동의 연계를 증대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4. 교육은 국가간 모순과 긴장의 기저를 이루는 경제적, 정치적 성격을 띤 역사적, 현실적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오늘날 이해와 진정한 국제 협력 그리고 세계 평화 발전에 실제로 장애가 되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15. 교육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강조해야 함과 아울러 이러한 이익은, 착취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독점적인 경제, 정치 권력 집단의 이익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강

조해야 한다.

16. 연구나 교육 체제 조직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그 자체가 시민 교육의 일부이자 국제 교육에 중요한 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문화적 측면

17. 회원국은 회원국간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교육 단계와 유형에서 서로 다른 문화, 상호 영향, 서로의 시각과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 외국 문명과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을 국제 이해 및 문화간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중시해야 한다.

주요 인류 문제에 대한 연구

18. 교육은 인간 생존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요 문제를 굳히고 악화하는 상황 - 불평등, 불의 또는 무력 사용을 토대로 한 국제 관계 - 을 근절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드시 학제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 인민 권리의 평등과 그들의 자결권;

(나) 평화 유지; 여러 형태의 전쟁과 그 원인 및 결과; 비무장; 과학과 기술을 전쟁 목적으로 이용치않고, 평화와 진보를 위해 이용; 국가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의 특성과 영향 그리고 그러한 관계, 특히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법의 중요성;

(다) 난민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 행사와 준수를 보장해 주는 행동; 인종 차별과 그 근절; 여러 형태의 차별에 대한 투쟁;

(라)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 그리고 사회 정의 관계;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방법과 수단; 문맹에 대한 투쟁; 질병과 기아에 대한 투쟁; 생활의 질을 높이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인구 증가와 그에 관계 있는 문제;

(마) 자연 자원 이용, 관리, 보존 그리고 환경 오염;

(바) 인류 문화유산 보존;

(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역할 및 활동 방식과 유엔 활동을 강화,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

19. 국제 관계에 수반되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직접 관계가 있는 학문과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기타 측면

20. 회원국은 교육 당국과 교육자에게 교육이 이 권고에 따라 인권의 적용과 국제 협력에 관계 있는 복잡한 쟁점에 적합한 간학문적이고, 문제 지향적이며, 교육 그 자체가 상호 영향, 상호 지원 및 연대의 이상을 보여주도록 계획할 것을 격려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충분한 조사, 실험 및 각각 교육 목적의 확인을 그 토대로 해야 한다.

21. 회원국은 국제교육 활동이, 예컨대 교육받을 기회가 명백하게 불평등한 곳에서 처럼 특별히 미묘하거나 폭발적인 사회 문제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실행될 때는 특별한 관심과 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VI. 교육의 여러 부문 활동

22. 모든 교육 단계와 모든 형식에서 국제적 및 문화간 성격을 개발하고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

23. 회원국은 유네스코 협조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협동 학교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회원국에서 협동 학교 사업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은 그 사업을 다른 교육 기관에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 전반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에서도 가능한 한 조속히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른 교육 기관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급해야 한다.

24. 취학 전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은 이 권고의 취지에 상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취학 전 교육에서 장려해야 한다. 이는 예컨대 인종에 대한 태도 같은 기본적인 태도가 취학 이전 시기에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태도는 어린이 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자로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아래 30항에 언급된 성인 교육은 취학 전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준비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등 교육을 독자적인 성격과 가치를 가지는 하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기획 조정해야 하며, 그러한 환경에서 게임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통해 어린이는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펴며, 한편으로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고, 또 직접 경험을 통해 자기가 점점 더 큰 사회 -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사회 - 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향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 회원국은 교사와 학생은 물론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고등 교육 및 대학 교육이 본 권고의 목적 달성에 더욱 충분히 기여하게끔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다.

26. 고등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시민 훈련과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훈련과 활동을 통해 학생은 그들이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할 주요 문제에 관한 자기 지식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겨냥한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을 제공하며, 또한 국제적 협동심을 키울 것이다.

27. 고등 교육 기관, 특히 대학교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게 됨에 따라 고등 교육 기관은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 교육이라는 광범위한 기능의 일부로 수행해야 하며, 모든 교육에서 범지구적인 접근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사용해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과 문제와 열망에 적합한 학습 활동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8. 국제협력의 연구와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은 그들의 역할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여러 형식의 국제 활동, 예컨대 외국 교수와 학생 초빙, 교수들간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의 연구 조사반간의 전문적 협력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연구와 실험 작업은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및 문화적 장애, 긴장, 그리고 외국 학생과 초청국 교육 기관 양자에 다같이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활동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29. 전문화된 직업 훈련의 모든 단계에는, 학생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평화 유지와 발전에 그들과 그들의 직업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되도록 일찍부터 그러한 역할을 적극 떠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30. 성인 교육을 포함한 학교 외 교육의 목적과 형태가 어떻든지 그것들은 아래와 같은 고려 사항들을 토대로 해야 한다:

(가) 가능한 한 범세계적인 접근 방식을 모든 학교 외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은 국제 교육에 적합한 도덕적, 시민적, 문화적, 과학적 및 기술적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모든 관련 집단은 매스 미디어, 독학, 상호 활동적인 학습 그리고 개인에게 적절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박물관이나 공공 도서관 같은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적극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호적 태도와 자발성을 장려하며, 본 권고의 목적에 맞춰 계획한 교육캠페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결합해야만 한다.

(다) 공공 단체든 사설 단체든 모든 관련 집단은 우호적이고 유리한 상황과 기회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 센터, 클럽, 문화 센터, 지역 사회 센터나 노동조합, 젊은이 축제, 스포츠경기, 외국인이나 학생 또는 이민과 접촉, 그리고 일반인의 교류 같은 것이 그것이다.

31. 유엔을 위한 학생 및 교사 협회, 국제 관계 클럽, 유네스코 클럽과 같은 조직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런 조직은 국제 교육 통합 프로그램 준비 및 이행과 관계 있어야 한다.

32. 회원국은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각 단계에서 이 권고의 목적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이 교육과 학습과 훈련의 여러 수준과 유형에 적합한 교과 과정 안에서 상호 조정되고 일관성 있는 전체를 형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권고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협동과 연합 원리는 모든 교육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VII. 교사 훈련

33. 회원국은 교사 및 그밖에 교육 종사자가 이 권고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역할을 확인해주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방법과 수단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가) 회원국은 교사에게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즉 인권 윤리와 변화하는 사회 목표를 위한 실천을 통해 인권을 실제에 적용하도록 할 것: 인류의 기본적인 단결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의 풍요로움이 모든 개인과 집단 또는 민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

(나) 회원국은 다른 수단을 포함, 세계 문제와 국제이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간학문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 회원국은 교사에게 학생의 열망을 참작하고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작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국제 교육과 교육 시설 및 자재에 관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대비하게 해야 한다;

(라) 회원국은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법, 특히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의 사회적 행동과 태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법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방법을 이용하는 실험을 해내야 한다;

(마) 회원국은 교육 혁신을 가져오고 본인의 훈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 집단 작업과 간학문적 연구에 대한 경험, 그룹 다이내믹스의 지식, 유리한 기회를 창출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적성과 숙련 기술을 개발케 해야 한다;

(바) 회원국은 국제교육에 대한 실험,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회원국이 실시한 혁신적인 실험도 연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 있는 담당자에게 외국 교사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34. 회원국은 감독이나 지도에 관계하는 자들, 예컨대 장학사나 교육상담가, 교사 훈련 대학의 학장, 젊은이와 성인을 위한 교육 활동의 조직자에게 훈련, 정보, 조언

을 제공해 그들로 하여금 교사가 이 권고의 목적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국제 문제와 관련해 젊은이의 소망을 참작하되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국제 교육 그리고 문화 간 교육과 관계 있는 세미나나 연수 과정을 조직해 당국과 교사를 참여케 해야 한다. 그밖에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도 감독자와 교사는 여러 관련 집단, 예컨대 부모, 학생, 교사 연합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역할에는 점진적이나 심오한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기관의 구조와 위계 체계를 개조하기 위한 실험의 결과를 훈련, 정보 및 상담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35. 회원국은 현직 교사와 감독자를 위한 심화 훈련의 프로그램이 국제 교육의 구성 요소 및 국제 교육에서 그 경험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36. 회원국은 특히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 연구와 해외 연수 과정을 장려하고 이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교사 초기 훈련의 정규 과정, 임용, 재훈련 및 승진에 이러한 연수 과정을 인정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37. 회원국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쌍무적인 교사 교류를 조직하거나 이에 협조해야 한다.

VIII. 교육 시설과 자료

38. 회원국은 많은 나라 학생이 국제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 대부분을 학교 밖 매스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특히 고려해, 국제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자료를 갱신, 생산, 보급, 교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표명한 필요성을 충족하려면 교수 보조물 부족을 극복하고 그 교구의 질을 높이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가) 교과서에서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의 장비와 이용 가능한 보조 장비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 기술을 적절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 학생이 매스 미디어로 전달받은 정보를 선택 분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스 미디어 교육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돼야 한다;

(다) 국제적인 구성 요소를 도입하고, 상이한 주제에 대한 지역적 및 국가적 국면을 제시하며, 또 인류의 과학사와 문화사를 보여주는 틀로 이용할 수 있는 범지구적인 접근 방식을 여러 교과서와 기타 학습 보조재에 사용해야 하고,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시각 예술과 음악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 인류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잘 보여 주고, 그 각각의 경우에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그 실행 양식을 보여주는 간학문적 성격을 갖는 기록 자료 및 시청각 재료를 유엔, 유네스코, 기타 전문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그 나라 교육 언어로 준비해야 한다.

(마) 각 국가의 문화와 생활 양식 및 이것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그리고 범세계적 관심사에 대한 활동과 참여를 보여주는 문서와 기타 재료를 준비해 다른 나라에도 전달해야 한다.

39. 회원국은 교육 보조재,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가 오해, 불신, 인종 차별주의 또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소가 전혀 없도록 보장해 주는 적절한 조치를 장려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이 권고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보급받는 정보와 사상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0. 각국의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회원국은 이 권고의 목적에 맞추어 고안하고 상이한 교육 형식과 단계에 적합하게끔 만든 기록 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문헌 센터를 한두 곳 설립하거나 설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들 센터를 특히 혁신적 아이디어와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 교육의 개혁을 조장하게끔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센터는 또 타국과 정보 교환을 계획하고 또 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IX. 조사와 실험

41. 회원국은 국제교육의 기초, 지도 원리, 추진 방법 및 효과 그리고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실험 활동, 예컨대 협동 학교 활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 연구 기관과 센터, 교사 훈련 기관, 성인 교육 훈련 센터 및 적절한 비정부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42. 회원국은 교사와 여러 관계 당국이 건전한 심리적, 사회적 토대 위에서 국제 교육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각국이 수행된 연구 조사, 즉 국제 교육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와 행동 형성과 개발에 관한 조사, 태도 변화에 대한 조사, 개성 발전과 교육의 상호 작용 조사, 그리고 교육 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응용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상당한 부분이 국제 문제와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젊은이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X. 국제 교육

43. 회원국은 국제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국제 협력을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권고를 이행하는 데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 안에 속한다면 어느 나라 문제에도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 각자는 독자적 활동을 통해 이 권고의 이행 그 자체가 국제 이해와 협력을 실천하는 한 방법임을 보여줘야 한다. 회원국은 예컨대 국제 교육에 관한 더 많은 국제 회의와 연구 회의를 열거나 또는 관계 당국과 비정부기구에게 그러한 회의를 열게끔 노력해야 하고; 외국 학생을 수용하고, 연구원, 교사 그리고 노동 단체나 성인 특히 혁신적 아이디어와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 교육의 개혁을 조장하게끔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센터는 또 타국과 정보 교환을 계획하고 또 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44. 회원국은 넓은 국제적 시각에서 자국의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 자국 협동 학교와 타국 협동 학교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45. 회원국은 폭넓은 교과서 교류,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와 지리 교과서 교류를 장려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지역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쌍무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체결해 그들 자료가 정확하고, 적절하며, 새로우며, 편견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 사람과 지식을 나누고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상호 연구와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